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과 接近

崔 章 鎬*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
- III. 商事仲裁의 學問的接近
- IV. 商事仲裁認識의 實證的考察
- V. 結 語

I. 問題의 提起

近日에 이르러 國內業界 및 學界를 中心으로 商事仲裁에 대한 論議와 觀心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난 1960 年代와 1970 年代의 우리나라企業은 과중한 高度成長目標下에 輸出이나 販賣等 企業의 外形的成長 및 實績競爭에 급급하였으나 80 年代에 이르러서는 國內·外經濟環境의 惡化에 당면하여 減量經營 내지 內實經營에 눈을 돌리게 되고 輸出入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痘理現象이라 할 수 있는 貿易클레임이나 消費者保護等에 대한 인식을 새롭히 하면서 效率的인 商事紛爭處理와 生產·財務·人事·마아케팅管理 못지 않게 企業紛爭管理와 企業法務管理에도 倍前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政府의 수출포상기준의 변경等 企業의 輸出實績規模에 대한 政府의 政策變化에 따라 物量爲主 또는 實績爲主의 企業目標에 대한 재고와 採算性 또는 實利爲主의 企業經營戰略 및 效率的인 紛爭管理와 더불어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商事仲裁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學界에서는 1984 年 5 月 全國國立法科大

* 本研究所 研究員, 檳國大學校 社會科學大 貿易學科 助教授

產業研究

學協議會가 文教部, 法務部, 總務處等 關係機關에 法學教育의 改善建議書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새삼스럽게 商事仲裁에 대한 觀心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립법과대학협의회가 전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法學教育은 급변하는 現代社會에 적응하기 어려워 법학도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法學教育年限의 연장과 더불어 法科大學의 教科目에 商事仲裁法을 비롯하여 貿易去來法, 環境保護法等의 새로운 法律科目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商經系大學 貿易學科에서는 商事仲裁科目이 設講되고 있으며 그 研究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商事仲裁科目이 國內大學貿易學科에 정규 教科目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후반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 商事仲裁에 대한 강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輸出主導型經濟開發에 의하여 貿易規模가 增大되고 貿易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70年代에 들어와 現實的需要에 부응하여 貿易學科에 貿易클레임이나 貿易클레임研究 또는 클레임論等의 名稱으로 클레임科目이 設講됨과 더불어 商事仲裁論科目이 정규과목으로 設講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商事仲裁는 法律學科目인가 貿易學科目인가? 商事仲裁가 法律學分野인가 貿易學分野인가에 대한 問題意識은 商事仲裁의 學問的性格이나 研究分野 및 研究對象이나 研究方法等의 認識과 接近의 問題를 提起해 한다. 이와같은 問題意識과 問題의 提起는 歐美의 學界에서와는 달리 貿易에 學問性을 부여하여 貿易學을 獨자적인 學問分野로 인정하려는 韓國의特殊性에 根據한다고 할 수 있다.

II.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 내지 性格把握의 문제는 그것이 法學의 研究分野, 研究對象인가 貿易學의 研究分野, 研究對象인가, 아니면 獨自의인 學問(科學)인가에 在內한다.

國內大學의 貿易學科에서는 商事仲裁論¹⁾ 이란 科目名으로 商事仲裁講座가 設講되고 商事仲裁 또한 貿易學研究의 對象이 되어 왔으며 法科大學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商事仲裁法 또는 仲裁法等의 科目으로 教科課程에의 新設·追加가 憲의²⁾ 되고 있다.

1) 商事仲裁論을 英文으로는 Commercial Arbitration 이라고 하기도 하고(檀國大, 啓明大, 弘益大等) Commercial Arbitration Theory라 하기도 하며(群山大) Arbitration in Commercial Affairs라고 하기도 한다(京畿大).

2) 「中央日報」, 1984. 5. 9. p.1, 「韓國日報」 1984. 5. 10. p. 11. 參照.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과 接近

法學(Science of Law)을 法現象을 考察의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라 하고 法學研究方法으로 法解釋學이나 法社會學의接近을 들때 商事仲裁分野는 이 범주에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 商事仲裁가 仲裁法 또는 商事仲裁法을 基本法으로³⁾ 하여 제도화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더우기 一部國家⁴⁾에서는 仲裁法規가 民事訴訟法에 편제되어 있음을 볼 때 하나의 實定法으로 商事仲裁法이 法學의 一分野로서 法學研究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商事仲裁를 法學의 한 分野로 할 때 이는 民·商法 또는 民事訴訟法等의 民事法次元과 國際法次元에서接近할 수 있다. 仲裁를 國民의 日常經濟生活에서 발생하는 紛爭을 해결하는手段⁵⁾ 으로, 商事仲裁는 一般營業上 또는 商業上의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利用되는 仲裁⁶⁾ 나 商去來에서 發生하는 紛爭을 仲裁人의 判定에 의하여 해결하는 合法手段⁷⁾으로 보아 주로 國內商事仲裁에 立脚함은 前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商事仲裁를 國際間의 商去來에서 발생하는 紛爭을 仲裁로 해결하는 制度인 國際商事仲裁에 입각하여 이를 國際貿易法이나 國際經濟法의 一部로 하고 나아가 國際法의 한 分野로 봄은 후자에 해당된다. 國際法의 범위를 점차 擴大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⁸⁾ 國際經濟去來秩序가 國際法의 主要部分⁹⁾ 을 이루게 됨에 따라 國際法의 中心을 經濟法에 두기에 이르렀고¹⁰⁾ 國際經濟紛爭의 解決方法으로 商事仲裁制度를 널리 活用하게 되었다.¹¹⁾ 國際貿易이란 國際經濟法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各國의 自然人, 法人 그리고 公共機關 또는 國際機構가 행하는 商行爲의 法律關係라 할 수 있고 여기에 脱연적으로 발생하는 紛爭을前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紛爭의 解決手段인 商事仲裁가 널리 利用되게 된 것은 第2次大戰以後 各國이 標準通商條約을 체결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¹²⁾ 1966年 UN이

3) 商事仲裁의 基本法이 仲裁法인 나라는 韓國, 英國, 美國, 오스트리아, 스웨덴, 요르단,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베마, 인도, 벨지움, 노르웨이等이 있고 商事仲裁法인 나라로는 中華民國이 있다.

4) 日本, 獨逸, 伊太利, 프랑스, 스위스等.

5) Martin Domke,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68. p. 1.

6) Katharine Seide, *A Dictionary of Arbitration and its Terms*. Ocena Publications Inc. p. 51.

7) 上坂酉三, 貿易實務辭典, 青林書院新社, 1965. p. 265.

8) 柳盛根, UNCITRAL ARBITRATION RULES 와 韓國商事仲裁法規, 大韓商事仲裁協會, 1976. p. 6. 參照.

9) 高瀧煥, 國際商事仲裁論, 法文社, 1980. p. 17.

10) 柳盛根, 前揭書. p. 6. 參照.

11) 入江啓四郎, 國際經濟紛爭의 爭訟處理, 成文堂, 1971. p. 16. 參照.

12) 柳盛根, 前揭書. p. 12. 參照.

產業研究

國際貿易法의 발전적 調和를 위해 창설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商事仲裁是 國際物品賣買, 流通證券 및 銀行의 商業信用, 國際貿易事業活動規制法, 保險, 運送等과 같이 國際貿易法의 한 分野로 하였으며 1976年에는 UN總會에서 UNCITRAL仲裁規則을 채택, 승인하기에 이르렀다.¹³⁾

한편 商事仲裁는 貿易學研究의 한 分野가 되고 있다. 商事仲裁의 貿易學的性質을 論하기 위하여는 먼저 貿易의 學問性問題와 研究分野가 究明되어야 한다. 貿易의 學問性問題는 무역을 단순한 技術이나 實務(Technique, Art)로 보는 견해와 獨자적인 科學·學問(Science)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歐美先進諸國에서는 貿易이 獨립된 學問體系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經濟學이나 經營學의 한 分野로 研究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다수의 學者들이 貿易의 獨자적인 學問性을 인정하고 있다.¹⁴⁾ 또한 貿易依存度가 7·80%나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日本, 自由中國等과 같이 貿易이 國民經濟를 左右하는 國家에서는 大學의 商經學部에 貿易學導攻을 두거나 貿易學科를 設置·運營하고 있다.¹⁵⁾ 특히 우리나라에는 1960~70年代의 비약적인 무역증대와 더불어 貿易比重이 높은 經濟構造로 인한 貿易의 重視性은 社會科學의 한 分野로서 貿易學의 生成을 가져오게 하였다.¹⁶⁾

13)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80. p. 46.

14) ① 金行權, 申東洙, 貿易學概論, 貿易經營社, 1984. p. 61. 朴餅洪, 現代貿易學概論, 博英社, 1982. p. 24. 參照。

② 貿易學전 반에 대한 總論的概說書를 「貿易概論」이라고 한 책은 少數(金成炫, 貿易概論, 博英社, 1979)인데 비해서 「貿易學概論」이나 「貿易學原論」이라고 한 책은 多數(朴炳鑄·李時煥, 玉璿鍾, 姜二秀, 朴餅洪等의 概論書)이다. 그外 著書名을 「貿易概論」에서 「貿易學概論」으로 바꾼 경우도 있으며(金行權·申東洙, 前揭書) 貿易學의 學問的性格과 無關한듯 하지만 貿易學概論이라고 한 概論書(金貞世·朴大衛·池龍熙, 貿易學概論, 博英社, 1983)도 있고 貿易學의 學問的性格을 긍정하면서도 著書名은 貿易學이 아닌 貿易概論이라고 한 概論書(李春三, 國際貿易概論, 博英社, 1983)도 있다.

③ 貿易의 學問性을 인정하여 貿易學을 INTERNATIONAL TRADE에 接尾辭 ICS(=science :學)를 결합한 INTRADICS (int'l Trade Science)로 표기하기도 하고(羅泰昊, 貿易學의 綜合的體系에 대한 研究, 「貿易學會 10周年記念 學術發表論文集」, 韓國貿易學會, 1984. p. 5. 參照) TRADEOLOGY로 표기하기도 한다.(朴餅洪, 前揭書, p. 23)

15) 朴炳鑄, 全國大學貿易學科의 教科課程編成에 대한 基本方向의 設定研究, 貿易學會誌, 第6卷, 1981. 3. p. 196; 金行權·申東洙, 前揭書, p. 61. 參照

16) 啓明大學, 各科學間의 動向, 啓明大學出版部, p. 239; 玉璿鍾, 貿易學概論, 法文社, 1981. p. 39 參照。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과 接近

어느 學問分野이건 하나의 學問分野가 獨立된 科學으로 體系化가 成立되려면 최소한 2 가지 條件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學問고유의 研究領域인 研究할 問題 즉 課題들이 있어야 되며, 둘째는 그 問題 즉 課題들을 연구·해결할 수 있는 科學的研究方法論이 定立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科學的研究方法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結果들을 한데 묶어서 體系化된 理論을 定立시킬 때 비로소 그 學問分野는 하나의 獨立된 學問으로 成立된다. 한편 모든 學問은 시대의 变遷에 따라 獨自의인 理論體系와 함께 새로운 學問으로 分化되는 것이며 貿易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貿易學은 國際貿易現象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¹⁷⁾ 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財貨, 用役 및 가변적 生산요소의 國際的去來를 통하여 經濟的價值를 창조하고 利益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國際貿易의 去來行爲를 研究하는 實踐的學問¹⁸⁾으로 體系化되고 定立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貿易學은 實踐的學問이기 때문에 貿易學體系는 貿易去來를 中心으로 하여 理論的側面과 實務的側面으로 구성된다. 貿易學의 學問의體系로서 理論的側面으로는 무역거래의 原因과 結果를 연구하는 國際貿易論(國際經濟學)과 貿易政策論等의 分野를 들 수 있으며 實務的側面으로서는 個別經濟單位인 貿易業體의 經營管理分野로서 貿易經營論과 貿易業體의 對外去來契約과 輸出入節次上에서 요구되는 節次的·法的問題等을 연구하는 貿易實務論이나 國際賣買論等의 分野를 들 수 있다. 商事仲裁論은 이 중 貿易去來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둘러싼 業務로 把握하여 貿易實務論의 한 분야로 보거나¹⁹⁾ 貿易學研究分野를 國際貿易巨視分折論分野와 外國貿易去來論分野(貿易管理) 및 貿易政策論分野로 區分하고 國際商事論을 外國貿易去來論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²⁰⁾ 이들 어느 견해나 商事仲裁論을 貿易學體系의 一部間으로 보는데는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商事仲裁는 法律學分野인 동시에 貿易學分野인가, 아니면 商事仲裁는 法律學分野이나 貿易學分野가 아닌 하나의 獨立된 社會科學(學問)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商事仲裁의 學問의獨自性問題는 國際經營이나 國際經濟 그리고 貿易經營이나 마아케팅의

17) 朴餅洪, 前揭書 p. 23.

18) 羅泰昊, 貿易學의 學問의體系에 대한 研究, 「學術發表會論文集」, 韓國貿易學會, 1984. 6. p. 5; 金行權·申東洙, 前揭書. p. 62.

19) 朴炳鎬·李時煥, 貿易學概論. p. 30; 金行權·申東洙, 前揭書 p. 65.; 玉璿鍾, 前揭書, p. 19 參照

20) 羅泰昊, 前揭論文, p. 13. 參照

產 業 研 究

獨自의인 學問性문제와 성질을 같이 한다.

國際經營은 經營學의 한 分野에서 시작하여 1960 年代初期부터 美國에서 그 研究活動이 활발해짐에 따라 독립된 學問分野로서 國際經營學으로서의 地位를 확립하기에 이르렀고 國際經濟 역시 經濟學의 한 分野로 파악되기도 하나 研究對象의 확대에 따라 貿易, 金融, 投資部門까지의 새로운 인식으로 국제경제학으로서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貿易經營은 工業經營이 製造中心의 生產經營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物品賣買活動과 그 組織, 管理 및 涉外機能을 포함한 것으로 아직 貿易經營學으로서의 독립된 學問體系와地位를 확립하지 못하고 特殊經營學의 一部의인 貿易經營論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또한 마아케팅의 學問的性格에 대하여는 技術論으로 보는 見解와 科學으로 보는 憲解가 대립되나 마아케팅이 營利的이고 微視的이며 規範的인 次元에 국한된다면 이는 科學이 아니며 또 될 수도 없는 것이나 마아케팅의 범위를 實證的次元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 이를 現象의 記述과 豫測 및 인식은 科學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¹⁾ 모든 科學은 接近方法에 있어서 體系性, 經驗性, 實證性, 一般性, 抽象性, 普遍性, 豫測性을 가지며²²⁾ 또한 時代의 变천에 따라 이러한 科學의in 接近方法의 개발과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體系와 함께 새로운 學問으로 生成·發展한다. 무역학의 경우 무역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學問의in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商事仲裁 또한 그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현시점에서 法律學이나 貿易學과 독립된 學問體系를 定立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貿易學은 綜合的이고 復合的인 學問의特殊性으로 經濟學이나 經營學 및 法學等의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商事仲裁는 貿易學을 그 인접학문인 法學과 交流케 하는 媒體的性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商事仲裁라는 自主의in 私的紛爭解決方法과 制度는 法律家뿐만 아니라 貿易學者나 史學者 또는 社會學者等의 觀心과 研究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그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商事仲裁의 어떤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며 商事仲裁의 學問의認識의 문제는 商事仲裁의 學問의接近問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21) Shelby D. Hunt, The Nature and Scope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Vol. 40, No. 3, 1976. 7, p. 23.

22)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博英社, 1978. p. 18. 參照.

III. 商事仲裁의 學問的接近

商事仲裁에 대한 學問的接近은 다양하게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고²³⁾ 있으나 이는 대체로 다음의 法律學的接近과 經營學의接近 및 貿易學의接近으로 大別하여 볼 수 있다. 즉 첫째로는 商事仲裁에 대한 法律學的接近이다. 이는 商事仲裁를 司法節次의 原理에 의한 訴訟(재판)의 代替制度 내지 裁判制度의一部로 보고²⁴⁾ 法律學研究方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商事仲裁를 商事仲裁의 基本法인 仲裁法이나 商事仲裁規則 또는 商事仲裁節次等에 대한 立法論이나 解釋論等 法理中心의 民事法次元에서의 연구와 國際商事仲裁의 國際法의 次元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國際商事仲裁는 특히 國際貿易實務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國際法은 오늘날에는 國家間의 관계를 규율하는 法을 넘어서 國際法을 國際社會의 法으로서 주로 여러 국가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또는 國際機構(그 機能, 그 相互間의 관계, 그 국가나 개인과의 관계)와 個人(그 權利, 義務가 國際社會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우에 한하여)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法²⁵⁾이라고 정의함과 더불어 國際經濟法이나 國際貿易法을 國際法의一部로도 보게 되었다.

商事仲裁의 法律學的接近으로는 美國하바드法科大學에 설강되는 國際法科目 가운데 국제거래에서 활용되는 商事仲裁²⁶⁾의 主要內容인 仲裁의 利點과 不利點, 仲裁의 有用性, 仲裁條項의 작성, 仲裁節次, 仲裁判定에 대한 法律審查, 仲裁判定의 구속력을 비롯하여 商事仲裁의 法機能²⁷⁾이나 商事仲裁에 관한 國際條約이나 協約 및 仲裁判定事例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연구에 대한 논문들은 法律專問誌²⁸⁾에 발표되고 있다.

23) 商事仲裁의 經濟學的接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商事仲裁에 대한 經濟學博士學傳論文(鄭人, 韓國商事仲裁制度의 效率의 運營을 위한 研究, 成大, 1982)도 있다.

24) Robert Coulson,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2, p. 6; Martin Domke, op. cit., p. 2, 4. 參照.

25) 李漢基, 國際法講義, 博英社, 1980, p. 14.

26) HARVARD LAW SCHOOL CATALOG (1981-82), p. 84 參照.

27) 喜多川篤典, 國際商事仲裁의 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8. p. 32. 參照.

28) 商事仲裁관계 논문들이 발표되는 英·美의 法律專門誌로서는

The International Lawyer (American Bar Associatio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The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The Business Lawyer, The Journal of Business Law (Stevens & Sons Limited). Tulane Law Review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等 多數가 있다.

產業研究

둘째로는, 商事仲裁에 대한 經營學的接近이다. 이는 商事仲裁에 대한 비즈니스관점에서의 연구라 할 수 있다. 國內經營 및 國際經營活動에는 그에 관계되는 모든 法律的問題를 취급하는 國際經營法制²⁹⁾ 가 중시된다. 特히 合作投資契約, 國제라이슨십계약, 資源開發契約等은 企業의 운영과 채산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協商專門家에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기업의 장래운영과 관련된 제반계약조건을 企業가 비지니스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바³⁰⁾. 國際經營人이나 國제마아케터가 알고 있어야 할 주요계약내용의 하나로 紛爭解決方法으로서의 商事仲裁를 들 수 있다. 商事仲裁에 대한 經營學的接近은 經營法制의 하나로 또는 企業活動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國際去來 내지 國際經營에 사용되는 특수한 實務와 技術의 하나로 國際商事紛糾의 해결방법으로서의 商事仲裁³¹⁾를 연구하는 것이다. 한편 國際經營活動으로 國際生產管理, 國際人事管理, 國際物動管理, 國제마아케팅과 國際財務 및 會計等과 더불어 企業法律管理로서³²⁾ 또는 國際經營의 판매전략, 財務·勞務·所有權·供給·統制戰略等과 더불어 法務戰略의 一環이나 또는 國際經營活動을 둘러싸고 있는 國際法律環境 또한 國際마아케팅 측면에서 국제마아케팅管理者가 統制不能한 海外環境의 하나인 法律環境³³⁾과 國제마아케팅에서 발생되는 商事紛爭의 解決대책으로 商事仲裁³⁴⁾를 접근하기도 한다.

세째로는 商事仲裁에 대한 貿易學的接近이다. 이는 商事仲裁를 輸出入關聯制度의 하나로서³⁵⁾ 또는 貿易去來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처리업무로 파악하는 貿易實務側面이나³⁶⁾, 貿易

29) Richard D. Robinson,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Hamlin Publications, 1973, p. 46; 安台鎬·金淳完, 國際經營論, 博英社, 1973, p. 375. 參照。

30) 朴晶植,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4, p. 219; 潘炳吉, 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81, p. 321 參照。

31) 潘炳吉, 國際經營論, p. 47. 參照。

32) 金元卿·秋憲, 國際經營學總論, 貿易經營社, 1980, pp. 520 ~ 523. 參照。

33) Richard D. Robinso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The Dryden Press, 1978, pp. 581-582; Stefan H. Robock. Kenneth Simmon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3rd ed.), Richard D. Irwin, Inc. 1983, p. 168. 參照。

34) Roland L. Kramer, International Management, South-Western Publishing Co. pp. 216-228; Vern T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The Dryden Press, 1978, p. 146; 潘炳吉, 國際마아케팅論, pp. 361 ~ 371 參照。

35) 韓國貿易協會, 輸出入節次解說, 1983, pp. 735 ~ 753 參照。

36) 朴炳鎬·李時煥, 前揭書, p. 29. 參照。

商事仲裁의 學問的認識과 接近

企業의 貿易클레임이나 貿易紛爭의 處理로서 貿易經營側面³⁷⁾, 그리고 政府의 輸出入秩序維持와 貿易클레임이나 紛爭의 신속한 해결처리로서 貿易管理側面³⁸⁾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商事仲裁의 貿易學의 接近方法으로서는 貿易클레임의 發生 및 處理와 仲裁件等의 實態調查와 같은 實證的研究가 많이 이용된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이들 각각의 접근은同一한 대상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商事仲裁研究에 이용되는 여러가지 어프로치(approach)는 확연히 구별되지 않거나 綜合的인 경우가 있다.

IV. 商事仲裁認識의 實證的考察

商事仲裁의 大衆的利用主體라고 할 수 있는 企業이 현실적으로 商事仲裁의 利用과 知識 및 教育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가를 實證的으로 파악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서의 상사중재에 대한 認識과 選好度 및 學問性의 문제를 檢證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84年 5月 大企業과 中小企業, 國內去來企業과 國際去來企業等 1,000 개 國내企業體를 대상으로 商事仲裁教育에 대한 需要度 및 商事仲裁科目設講 必要學科에 대한 設問調查를 실시한 바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企業規模에 대한 區分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第1項에 의한 中小企業者의 범위를 기준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区分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工業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인 경우 상시종업원수 300人以下, 건설업인 경우는 200人以下, 상업 기타 서비스업인 경우는 20人以下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去來形態의 區分은 商事仲裁規則 第2條에 의하면 국내중재인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仲裁를 제외한 仲裁는 모두 國際仲裁로 하는 것에 맞추어 국내거래기업은 국내거래만을, 국제거래기업은 국제거래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즉 국제거래만 하거나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겸하는 거래 및 三國間去來를 하는 기업으로 보았다.)

37) 鄭客珉, 最新貿易經營論, 博英社, 1984, pp. 301 ~ 316 參照.

38) 羅泰昊, 前揭論文, p. 13; 申東洙, 貿易去來法, 貿易經營社, 1984, pp. 269 ~ 271; 安光昌, 貿易去來法, 法文社, 1982, pp. 466 ~ 467 參照.

產業研究

첫째로, 大學에서 商事仲裁에 대한 강의가 必要하다고 보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239 개 기업의 응답자 가운데 227 개 기업, 95 %가 必要하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企業의 商事仲裁教育에 대한 인식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表 1>에서와 같이 去來形態別로 분석하여 보면 34 個 國內企業中 31 個企業 91.2 %가 必要하다고 응답한데 비하여 205 個 國際去來企業 가운데 196 個企業 95.6 %가 必要하다고 하여企業의 國內去來上에서 商事仲裁知識 및 教育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있으나 國內去來企業보다는 國際去來企業에서 더욱 商事仲裁knowledge의 必要性과 商事仲裁education에 대한 需要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企業規模別로 분석하여 보면 大企業은 95.8 %가 大學에서의 상사중재강의가 必要하다고 응답하고 中小企業은 93.2 %가 必要하다고 응답하여 中小企業과 大企業 모두 큰 차이 없이 商事仲裁knowledge과 education에 대한 必要와 需要是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대학에서의 상사중재강의의 필요성

〈表 1〉

단위 : 응답기업수

	대 기 업		중 소 기 업		합 계
	국내거래	국제거래	국내거래	국제거래	
필요없다	2	5	1	4	12 (5)
필요하다	22	137	9	59	227 (95)

註 : ()안은 百分比

둘째로 우리나라企業의 商事仲裁knowledge에 대한 專攻選好度 즉 商事仲裁education이 어떤 전공분야에서 필요시되고 관련되는가 하는 商事仲裁科目設講學科에 대한 인식은 단연 무역학과가 수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表 2>에서 보는바와 같이 商事仲裁講義가 어느 學科에서 개설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221 個企業의 응답자 가운데 127기업이 貿易學科에 표시하여 무역학과가 전체응답자의 57.5 %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經營學科, 法學科順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其他에 있어서도 무역학과와 법학과에서 상사중재강의가 설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기재한 응답자가 전체의 5.4 %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무역학과와 경영학과가 2.7 %, 무역학과·법학과·경영학과 1.4 %, 무역학과·경영학과·법학과·행정학과 3.2 % 및 법정·상경계학과와 상경계전학과 공동선택 등으로도

商事仲裁의 學問의 認識과 接近

<表 2>

상사중재과 목설 강필요학과

단위 : 응답기업수

		대 기 업		중 소 기 업		합 계
		국내거래	국제거래	국내거래	국제거래	
무 역 학 과	8	77	5	37	127 (57.5)	
경 영 학 과	8	16	1	10	35 (15.8)	
법 학 과	4	16	2	4	26 (11.8)	
행 정 학 과		1	1		2 (0.9)	
기 타	무역·법학과	2	10			12 (5.4)
	무역·경영학과		6			6 (2.7)
	무역·법학·경영학과		3			3 (1.4)
	무역·법학·경영·행정학과		5		2	7 (3.2)
	상경·법정계학과		1			1
	상경제전학과			1		1
	공동선택		1			1

註 : ()안은 百分率

기재하여 실제 무역학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70%以上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去來形態別로 보아도 國內去來와 國際去來 모두에게 무역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順으로 되어 있으나 國內去來에서보다 國際去來에서 무역학과의 비율이 높으며 경영학과와 법학과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企業規模別로 보아도 大企業과 中小企業 모두 무역학과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학과와 법학과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商事仲裁制度의 利用與否를 결정하는 紛爭主體가 되는 企業側에서 볼 때 貿易實務나 商去來業務遂行에 있어 상사중재에 대한 지식이 필요시되며 商事仲裁와 貿易學과의 관련성이 특히 긴밀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무역학 다음으로 경영학과와 법학과 등 상경제와 법학계가 次順位로 되어 있음은 우리나라 企業現實에서 무역실무와 더불어 經營管理 및 法律實務를 포함한 法務管理等에서 職務知識의 一環으로 상사중재에 대한 지식이 필요시되고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상사중재를 이들

產業研究

학문의 學際間共國對象分野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語

商事仲裁는 高貿易依存度의 經濟構造와 더불어 貿易의 學問性과 관련하여 그 學問的性
格 및 認識 그리고 接近對象·範圍·分野·方法等이 문제된다. 이러한 商事仲裁의 學問的
認識과 接近에 대한 問題意識은 商事仲裁의 學問性, 즉 그것을 科學으로 볼 것이냐 技術
이나 實務로 볼 것이냐 하는 것과 法律學 및 貿易學과 商事仲裁法이나 商事仲裁論과의 關係
究明으로 彙着된다.

歐美에서와는 달리 貿易比重이 높은 經濟構造와 貿易의 學問性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學問的風土에서는 商事仲裁에 대한 學問的視覺도 歐美에서와 同一할 수만은 없다. 科學은
시대의 变遷에 따라 또한 學究的研究에 의한 科學的인 體系의 구축으로 生成發展되고 細
分化되어 가는 것이며 商事仲裁分野 또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商事仲裁의
學問的性格은 商事仲裁의 研究와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商事仲裁는 오늘
날 本論文의 제 2 장과 제 3 장에서 살펴보고 제 4 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체
로 法律學的側面과 經營學的側面 그리고 貿易學的側面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商事
仲裁에 대한 研究는 法理中心의 法律學의 아포로치가 중요하고 實用爲主의 貿易學의 아포로
치 및 經營學의 아포로치가 重要視된다. 商事仲裁의 이러한 特性은 商去來의 多樣性이나 複
雜性, 또는 國際性과 商去來의 主體인 企業의 大型化와 國際化 및 自律化的 進展에 따라
상호仲裁의 有用性의 增大와 더불어 學問研究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多角的인 接近을 촉구
한다. 또한 法律學에 信用狀이나 貿易去來等의 分野를 포함하려는 法律學의 領域擴大추세
와 貿易學의 綜合的性格은 두 學問間의 相互接近과 交流를 촉진케 하며 隣接學問과의 關係
을 더욱 밀접하게 한다. 따라서 商事仲裁에 대한 接近에는 法律學, 經營學, 貿易學等과의
밀접한 關係성과 상호의존성으로 理論과 實務를 망라한 綜合的인 學際間研究가 요구된다.